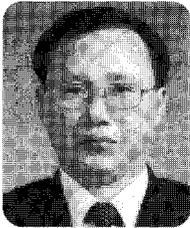


# '축산업 등록제' 도입배경과 추진 방향



조 규 담 과장  
농림부 축산정책과

### 1. 도입 배경

지난 11월 7일 축산업 등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1999년 1월 축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던 축산업 등록제가 4년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축산업 등록제를 다시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국과 인접하고 있어 가축질병 예방 및 관리에 불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WTO체제 출범이후 이들 나라들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악성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축산업은 도시근교에서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다두 사육하는 집단·밀집사육 형태가 많아 가축분뇨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농장 소독 및 사람·차량의 출입관리가 미흡한 농가들로 인하여 효율적인 가축질병의 예방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5월 경기 용인과 안성, 충북 진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금년 4월 강원 철원과 그리고 10~12월의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지역의 돼지콜레라도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질병관리가 취약한 농가에서 발병하였으며, 사람·차량 등에 의해 인근 농가 및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표 1> 축산업 등록·허가기준 및 허가상한선 변천

구 분		'85. 5	'94. 6	'95	'99. 9
등록대상	종축업	• 종돈 20두 이상 • 종계 1천수 이상	• 종돈 50두 이상 • 종계 1천수 이상	• 부화업 • 종돈 50두 이상 • 종계 1천수 이상	신고제 전환
	양돈업	• 모돈 50두 이상	• 모돈 200~499두	• 모돈 500~999두	폐지
	양계업	• 산란계 3만수 이상 • 육계 1만수 이상	• 5만수 이상 • 5만수 이상	• 5만수 이상 • 5만수 이상 • 산란계용 증병아리 3만수 이상	폐지
허가대상	양돈업	• 모돈 500두 이상	• 모돈 500두 이상	• 모돈 1천두 이상	폐지
상 한 선	양돈업	-	• 모돈 1천두	• 모돈 2천두	폐지

그동안 검역당국과 지자체, 군·경, 민간 및 생산자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가축 살처분, 이동통제 및 소독 등 강도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추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해 막대한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 또한 컸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가축질병의 예방은 어떠한 훌륭한 방역조치 보다 값싸고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경검역 강화와 함께, 개별 농장단위의 철저한 소독 등 자율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자단체

에서도 축산업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

## 2. 과거의 축산업 등록·허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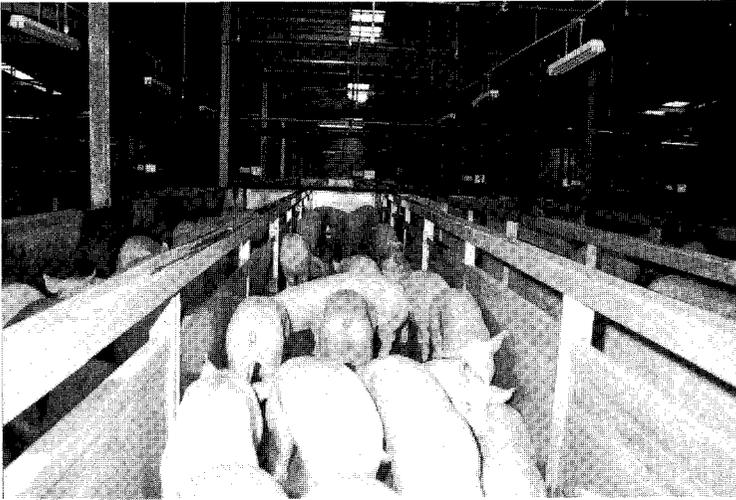
우리 축산업계는 수급 및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 80년대 중반 축산업 등록제 등을 도입하여 '99년까지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축산업 등록·허가제는 축산물 수급 및 사육두수 조절을 위하여 도입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축산업 등록제는 가축질병 방역·안전성 강화, 그리고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등록제와는 크게 다르다.

'84년 8월 첫 축산업 등록제 도입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83년말 사육두수 과잉으로 돼지가격이 하락하여 농가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양돈농가들까지 사육두수를 증가시켜 부업농가의 축산소득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부업규모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돼지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정확한 관측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양돈업과 양계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84. 8. 2 축산법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모돈 50두 이상 규모의 양돈업과 산란계 3만수·육계 1만수 이상 양계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토록 하고, 축산물



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축의 생산·사육 및 출하조절과 가축 또는 축산물의 비축·판매 및 처리방법 등을 명하고,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사육두수 감축명령, 초과사육 부과금 부과, 등록 및 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87~'88년에 양돈업이 계속 불황을 겪게 되자, '89. 3. 31 축산법을 개정하여 돼지사육두수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보다 강력하게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97. 7월 돼지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급조절을 위한 종전의 등록·허가제는 그 유용성이 낮아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업에 대한 신규인입을 금지함으로써 양돈업의 규모화 및 돼지고기 수출을 제한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에 따라 '99. 1월에는 축산농가의 자유로운 축산업 경영을 위해 허가·등록제와 허가 상한제도를 폐지('99. 1 축산법 개정)하였다.

그러나, 축산업 등록제 폐지 이후 국내 축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종축업 및 부화업계의 위생 및 질병 관리가 미흡하여 뉴캐슬병 등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축산경영의 크나 큰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외국사례

대만은 '97. 3월 구제역 발생 이후 양돈장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산사업장의 등기를 의무화하는 축목업 등기제를 '98. 8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농장책임자나 주요 관리인은 직업학교 이상의 수의·축산과를 졸업하거나, 정부 주관 훈련과정 수료(1개월 이상) 또는 2년 이상 현장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의 기준에 부합되는 축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축목장은 전담 수의사를 두거나 수의사와 계약을 통해 위생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축목업 희망자는 등기신청서를 구비하여 소재지 현·시에 신청하면 현·시에 서는 접수 1개월 이내에 심사 후 자격을 갖춘 자에게 등기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편 축목장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3만~15만원(120~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벨기에는 특별위생관리시스템(Special Sanitation System, SANITEL)을 구축하여 모든 가축을 출생에서 도축(폐사) 때까지 농장별, 개체별(소) 또는 집단별(돼지, 닭)로 전산등록토록 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소부터 적용, 현재 돼지·면양·산양 및 가금류 등으로 확대하여 왔다.

모든 가축(소는 개체별, 기타 가축은 축군별)은 출생후 7일 이내에 SANITEL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된 가축은 등록부에 등재되며 이표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농장주는 SANITEL 등록부, 진료기록, 처방전, 사료구입 영수증과 사료검사 성적서 등은 바인더 기록부에 편철하여 보관·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SANITEL에 등록한 가축에 한하여 출하·이동·판매가 허용되며 미등록 가축 발견시 정부당국에 의해 압수·폐기하게 된다. 한편 등록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담당수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이표 부착거부 등으로 이표가 없을 경우 법정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4. 등록제 도입방안

##### 가. 개정 축산법의 주요내용

개정축산법은 등록대상 축

산업, 축산업 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등 축산업 등록제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축산업 및 규모, 등록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 축산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등록대상 축산업은

로 같음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등록은 필요없다. 하지만,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등록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개정축산법 시행후(공포후 1년후, 2003. 12월 예상) 신규로 종축업과 부화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새로

---

**가축질병의 예방은 어떠한 훌륭한 방역조치 보다 값싸고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가축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국경검역 강화와 함께, 개별 농장단위의 철저한 소독 등 자율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이유로 생산자단체에서도 축산업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 왔다.**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소·돼지·닭 사육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 사육업이다.

등록기관은 시·군이다.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화업과 종축업은 등록제로 관리가 강화되며, 개정축산법에서는 기존의 신고를 등록으

로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계란집하업을 하는 자도 소독시설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소·돼지·닭 사육업의 등록대상 규모는 규모별 질병발생 실태 및 사양관리 상황과 함께, 등록제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

획이다.

등록대상이 되는 기타가축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의 매개체가 되는 우제류 가축, 예를 들면 사슴, 양, 염소 등을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2003년 12월부터는 개정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 및 장비의 종류와 기준은 축사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축산업 등록을 한 자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축산업의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 취소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등록취소 이후

에도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축산업자와 동일한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축산업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등록한 축산업을 휴·폐업하거나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한편 등록제의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업자가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의 등록을 않고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축산업 등록제의 세부사항은 관련 생산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나. 추진일정

'02년 12월까지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축산업 등록제 시행안

및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03. 1월 시행안 등에 대한 공청회 실시, '03. 3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03년 하반기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농가홍보 등 등록제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축산업 등록제 도입은 그동안 전업화·규모화 등 양적·외형적 성장에 치중하던 축산업이 소비자·국민과 함께 하며,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등록제 도입을 계기로 가축사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책임지는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돈**

